

[정 정 대 비 표]

■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

편	드	명	BNK튼튼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정	정	서	류	(간이)투자설명서	
정	정	사	유	직판 클래스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효	력	발	생	일	2022년 03월 18일

■ 정정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	-	- 2022.02.28 기준으로 업데이트
[요약정보] 매입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요약정보] 환매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요약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직판 클래스 신설	<신설>	온라인직접판매(J-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용어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u>대차대조표</u> - <u>전자단기사채</u>	- <u>재무상태표</u> - <u>단기사채</u>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	-	- 2022.02.28 기준으로 업데이트
매입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직판 클래스 신설	<신설>	온라인직접판매(J-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직판 클래스 신설	<신설>	- J-e, J-Pe, J-P2e 추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직판 클래스 신설	<신설>	- J-e 추가 - J-Pe 추가 - J-P2e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2022.03.18: 직판 클래스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2022.02.28 기준으로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직판 클래스 신설	가. (생략) 나. 종류형 구조 <신설>	가. (현행과 동일) 나. 종류형 구조 - J-e, J-Pe, J-P2e 추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투자 대상 ① 전자단기사채 및 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가. 투자 대상 ① 단기사채 및 어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

		<p>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p> <p>② 채권(전자단기사채 제외): (생략)</p> <p>③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④ ~ ⑪ (생략)</p> <p>나. 투자 제한</p> <p>① (생략)</p> <p>② 이 투자신탁 ~ 있다.</p> <p>가. (생략)</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생략)---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고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 (이하 생략)---</p> <p>③ ~ ⑥ (생략)</p>	<p>조에 따른 단기사채(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p> <p>② 채권(단기사채 제외): (현행과 동일)</p> <p>③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④ ~ ⑪ (현행과 동일)</p> <p>나. 투자 제한</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이 투자신탁 ~ 있다.</p> <p>가. (현행과 동일)</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생략)---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고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 (이하 현행과 동일)---</p> <p>③ ~ ⑥ (현행과 동일)</p>
<p>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p>	<p>직판 클래스 신설</p>	<p>가. 매입</p> <p>(1) (생략)</p> <p>(2) 종류별 가입자격</p>	<p>가. 매입</p> <p>(1) (현행과 동일)</p> <p>(2) 종류별 가입자격</p>

		<p><신설></p> <p>(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p> <p>(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p> <p>(다) (생략)</p> <p>(4) (생략)</p> <p>나. 환매</p> <p>(1) (생략)</p> <p>(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제3영업일(D+2)</u>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4영업일(D+3)</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제4영업일(D+3)</u>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이하 생략)</p>	<p>- J-e, J-Pe, J-P2e 추가</p> <p>(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p> <p>(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p> <p>(다) (현행과 동일)</p> <p>(4) (현행과 동일)</p> <p>나. 환매</p> <p>(1) (현행과 동일)</p> <p>(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3영업일(D+2)</u>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4영업일(D+3)</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4영업일(D+3)</u>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이하 현행과 동일)</p>
<p>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u>대차대조표상</u>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p>	<p>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u>재무상태표상</u>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p>

		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직판 클래스 신설	- <신설>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 J-e, J-Pe, J-P2e 추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직판 클래스 신설 및 과세 관련 내용 업데이트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 나. 과세 (1)~(3) (생략) (4) <u>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Class C-P, C-Pe 및 S-P 가입자</u>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u>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u> - <u>세액공제(2014.1.1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u> <u>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u> - <u>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u> - <u>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u>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 나. 과세 (1)~(3) (현행과 동일) (4) <u>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Class C-P, C-Pe, S-P 및 J-Pe 가입자</u>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u>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u> - <u>세액공제:</u> [납입금액] - <u>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u> ① <u>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u> ② <u>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u>

		<p>(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u>Class C-P2 및 C-P2e 가입자</u></p> <p>- <u>세액공제(2015.1.1 부터) :</u> <u>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u></p> <p>- <u>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u></p> <p>- <u>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u></p> <p>※ <u>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u></p>	<p>③ <u>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u> <u>[세액공제]</u></p> <p>- <u>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u></p> <p>(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u>Class C-P2, C-P2e 및 J-P2e 가입자</u></p> <p>- <u>세액공제 :</u></p> <p>- <u>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u></p>
--	--	--	---

			<p>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p>※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p>
--	--	--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의무해지] (생략)</p> <p>[임의해지]</p> <p>▶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p>	<p>[의무해지] (생략)</p> <p>[임의해지]</p> <p>▶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p>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가. 정기보고서</p> <p>(1) (생략)</p> <p>(2) 자산운용보고서</p> <p>-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p>	<p>가. 정기보고서</p> <p>(1) (현행과 동일)</p> <p>(2) 자산운용보고서</p> <p>-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p>

		<p>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u>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u>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p>
--	--	---	--

<끝>.